투자설명서 변경 주요내용

1. 대상 투자신탁 : **하이 실적 포커스 30 증권 투자신탁 1호[채권혼합]**

2. 변경 시행일 : 2015년 9월 3일

3. 변경사유

①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갱신
②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수익자총회 결의 사항 추가)
③ 채권평가회사 추가
④ 과세내용 추가

4. 변경사항 (투자설명서)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갱신	-	- 운용전문인력(운용현황) -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- 재무정보 -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-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- 집합투자업자 요약 재무정보 - 집합투자업자 운용자산 규모 -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세액공제 :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	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세액공제 :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
	<추 가>	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
6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. 회사의 개요	<추 가>	**에프엔자산평가**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수익자총회 등	② 투자신탁종류의 변경,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, 집합투자업자의 변경, 환매금지	② 투자신탁종류의 변경,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, **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(법시행령 제80조 제**

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	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,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	**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)**, 집합투자업자의 변경,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,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1)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	<추 가>	⑤-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(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

끝.